

이주현 노무사 「핵심정리 사회보험법」
제4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(2019-05-01)

P17 내용수정

*(기존)

23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- §26, 령§34~35

성립신고 해태	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**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50% 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 **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	▶ 다만, 요양시작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 ▶ 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납부했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 초과X
------------	--	---

*(수정)

23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- §26, 령§34~35

성립신고 해태	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**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50% 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 **보험가입신고를 해야할 기간(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)이 끝난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	▶ 다만, 요양시작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 ▶ 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납부했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 초과X
------------	---	---

P17 내용추가

*(기존)

24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및 통지·독촉 - §26의2, §27, §28

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	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, 환수금, 기타징수금,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순위는 다음에 따른다. (고용보험 관련 징수금과 산재보험 관련 징수금을 모두 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별 총징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징수)
	① 체납처분비 ② 월별보험료, 개산보험료, 확정보험료 ③ 연체금 ④ 가산금 ⑤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금

*(수정)

24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및 통지·독촉 - §26의2, §27, §28

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	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, 환수금, 기타징수금,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순위는 다음에 따른다. (고용보험 관련 징수금과 산재보험 관련 징수금을 모두 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별 총징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징수)
	① 체납처분비 ② 월별보험료, 개산보험료, 확정보험료 ③ 연체금 ④ 가산금 ⑤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금 ⑥ 환수금

P45 내용수정

*(기존)

29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등 - §48~50, §56, 령§70~71

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	정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급기간이란 실업의 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▶ 수급일수란 수급기간내 소정급여일수를 말함 ▶ 구직급여는 수급기간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지급
-------------------	----	---

*(변경) : [그림] 대기시간 ⇒ 대기기간

P55 내용삭제

*(기존)

35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- §70~73, 령§95~95의2, 령§98, 령§104의2

급여감액	육아휴직급여 감액	<p>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로서 매월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% 해당 금액에서 빼고 지급</p> <p>예) 통상임금 200만원인 자 육아장려금 150만원 회사에서 지급 + 60만원(200만원의 40%의 75%) = 210만원 but 200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을 60만원에서 빼고 지급(즉 50만원만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)</p>
------	-----------	---

*(변경)

35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- §70~73, 령§95~95의2, 령§98, 령§104의2

급여감액	육아휴직급여 감액	<p>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로서 매월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% 해당 금액에서 빼고 지급</p>
------	-----------	---

P59 내용삭제

*(기존)

38 심사 및 재심사청구 - §87~104, 령§112

재심사	재심사 청구 노③④	청구기간 및 청구	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 이내 심사위원회 에 재심사 청구 가능
		상대방	재심사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 장 or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방 으로
	고용보험 심사위원회	배치	재심사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를 둔다.
		재결기간 (재심사기간)	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.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해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
		해촉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•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•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•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	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	방법	문서로
		효력	재결은 재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 장or근로복지공단에 재결서의 정보 보낸 날 부터 효력발생 재결은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 장 or 근로복지공단 기속
	재결에 대한 불복	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, 재결이 있는 날 부터 1년 경과시 제기 ✕	

*(변경)

38 심사 및 재심사청구 - §87~104, 령§112

재심사	재심사 청구 노③④	청구기간 및 청구	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 이내 심사위원회 에 재심사 청구 가능
		상대방	재심사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 장 or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방 으로
	고용보험 심사위원회	배치	재심사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를 둔다.
		재결기간 (재심사기간)	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.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해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
		해촉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•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•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•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	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	방법	문서로
		효력	재결은 재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 장or근로복지공단에 재결서의 정보 보낸 날 부터 효력발생 재결은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 장 or 근로복지공단 기속

P67 내용삭제

*(기존)

09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- §37, 령§27~35의2

업무수행 중 사고	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- ○	원칙 노⑭⑮	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 준비or마무리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른 필요적 부수행위
		사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점심시간에 회사의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(○) • 조립작업 중 간질발작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(×) 공사현장에서 작업전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다 몸에 옮겨 붙은 사고(○) 10분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해 회사 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 사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(○) 회사 사장이 일으킨 사고 뒤처리를 위해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(○)

*(변경)

09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 - §37, 령§27~35의2

업무수행 중 사고	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- ○	원칙 노⑭⑮	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 준비or마무리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른 필요적 부수행위
		사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점심시간에 회사의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(○) 공사현장에서 작업전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다 몸에 옮겨 붙은 사고(○) 10분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해 회사 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 사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(○) 회사 사장이 일으킨 사고 뒤처리를 위해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(○)

P76 내용수정

*(기존)

15 휴업급여 - §52~56

휴업 급여액	부분 휴업급여	원칙 노⑫	$(\text{취업한 날or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} - \text{취업한 날or시간에 받은 임금}) \times 90\%$ 예) 요양중인 근로자가 특정일에 취업, 16만 원 받음. 휴업급여?(평균임은 20만원) : $(20\text{만} - 6\text{만원}) \times 90\% = 3\text{만}6\text{천원}$
--------	---------	----------	---

*(변경)

15 휴업급여 - §52~56

휴업 급여액	부분 휴업급여	원칙 노⑫	$(\text{취업한 날or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} - \text{취업한 날or시간에 받은 임금}) \times 90\%$ 예) 요양중인 근로자가 특정일에 취업, 16만 원 받음. 휴업급여?(평균임은 20만원) : $(20\text{만} - 16\text{만원}) \times 90\% = 3\text{만}6\text{천원}$
--------	---------	----------	--

P102 내용추가

*(기존)

02 국가의 책무 및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- §2, §3의2, §4, §5

국민연금 심의위원회	구성	위원장	보건복지부차관
		부위원장	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호선
		위원	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or위촉 ① 사용자대표위원 -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② 근로자대표위원 -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③ 지역가입자대표위원 - 농어업인단체 추천 2명, 그 외자영자관련단체 추천 2명, 소비자 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2명 ④ 공익대표위원 -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⑤ 수급자대표위원 - 4명

*(변경)

02 국가의 책무 및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- §2, §3의2, §4, §5

국민연금 심의위원회	구성	위원장	보건복지부차관
		부위원장	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호선
		위원	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or위촉(임기 2년) ① 사용자대표위원 -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② 근로자대표위원 -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③ 지역가입자대표위원 - 농어업인단체 추천 2명, 그 외자영자관련단체 추천 2명, 소비자 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2명 ④ 공익대표위원 -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⑤ 수급자대표위원 - 4명

P103 내용삭제

*(기존)

03 가입 - §3, §6~10, §13, 령§18~19, 령§22

지역 가입자 노⑩⑪	가입대상 제외자	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제외. 단, 국민연금과 지역연금 연계신청 한 경우에는 제외×	
		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(단,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하지 않음)	
	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or의료급여 수급자(희망여부 불문)	
		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	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 無 (※ 별정우체국 직원의 배우자는 삭제됨)
		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 (타법적용자,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 등)	
사업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임의계속가입자			
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			

*(변경)

03 가입 - §3, §6~10, §13, 령§18~19, 령§22

지역 가입자 노⑩⑪	가입대상 제외자	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제외. 단,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신청 한 경우에는 제외×	
		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(단,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하지 않음)	
	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^{or} 의료급여 수급자(희망여부 불문)	
		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	
		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 (타법적용자,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 등)	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 無
		사업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임의계속가입자	
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			

P108 이탈자

*(기준)

08 신고 및 통지 - §21~23, §15, 규칙§16, 규칙§19

통지	가입자등에 대한 통지	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·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,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	사업장가입자는	그 사업의 사용자에게 통지
			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, 임의계속가입자는	그 지역·임의·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
공단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, 통지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.				

*(변경)

08 신고 및 통지 - §21~23, §15, 규칙§16, 규칙§19

통지	가입자등에 대한 통지	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·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,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	사업장가입자는	그 사업의 사용자에게 통지
			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, 임의계속가입자는	그 지역·임의·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
공단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, 통지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.				

P112 내용수정

*(기준)

11 급여의 종류 및 급여 지급 - §49~54의2

급여수급전용계좌	의의	수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(민사집행법에 정하는 금액(150만원))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(급여수급전용계좌)로 입금하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단은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해야 한다.
	현금지급	공단은 정보통신장애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 피
	관리	급여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, 이를 관리해야 한다.

*(변경)

11 급여의 종류 및 급여 지급 - §49~54의2

급여수급전용계좌	의의	수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(급여수급전용계좌)로 입금하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단은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해야 하고,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.
	현금지급	공단은 정보통신장애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 가능
	관리	급여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, 이를 관리해야 한다.

P124 내용수정

*(기존)

23 국고부담 및 보험료 부과·징수 - §87~88, §98

보험료 부과·징수	부담	구분	부담자	부담금
		사업장가입자	기여금 - 사업장가입자 본인	기준소득월액의 0.45%
부담금 - 사용자가 부담	기준소득월액의 0.45%			
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, 임의계속가입자	본인 부담	기준소득월액의 0.9%		

*(변경)

23 국고부담 및 보험료 부과·징수 - §87~88, §98

보험료 부과·징수	부담	구분	부담자	부담금
		사업장가입자	기여금 - 사업장가입자 본인	기준소득월액의 4.5%
부담금 - 사용자가 부담	기준소득월액의 4.5%			
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, 임의계속가입자	본인 부담	기준소득월액의 9%		

P150 내용수정

*(기존)

18 고액·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공개 및 결손처분 - §83, §84, 령§48, 령§50

고액·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	공개제외 (령§48)	① 체납된 보험료, 연체금, 체납처분비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or 행정소송 계류중인 경우 ② 체납자가 체납자가 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③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보험료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통지 당시 체납된 보험료,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30% 이상을 그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

*(변경)

18 고액·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공개 및 결손처분 - §83, §84, 령§48, 령§50

고액·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	공개제외 (령§48)	① 체납된 보험료, 연체금, 체납처분비등과 관련하여 이의신청or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심판or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② 체납자가 체납자가 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③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보험료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통지 당시 체납된 보험료,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30% 이상을 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

P156 내용수정

*(기존)

24 기타 - §96의2, §102~108, 규칙§58, 규칙§62

정보의 유지등	공단, 심사평가원, 대행정구단체에 종사했던 사람or종사하는 사람은 ① 가입자·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됨. ②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or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됨
---------	--

*(변경)

24 기타 - §96의2, §102~108, 규칙§58, 규칙§62

정보의 유지등	공단, 심사평가원, 대행정구단체에 종사했던 사람or종사하는 사람은 ① 가입자·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or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됨. ②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or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됨
---------	--

P157 내용수정

*(기존)

24 기타 - §96의2, §102~108, 규칙§58, 규칙§62

실업자에 대한 특례	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 가능 단, 임의계속가입신청 후 최초로 내야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 유지 ×
------------	---

*(변경)

24 기타 - §96의2, §102~108, 규칙§58, 규칙§62

실업자에 대한 특례	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 가능 단, 임의계속가입신청 후 최초로 내야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 유지 ×
------------	---

P158 내용수정

*(기존)

25 벌칙 - §115~119

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이하 벌금	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직무상 목적외 용도로 이용 or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
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이하 벌금	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업무수행하면서 알게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외 용도로 이용 or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

*(변경)

25 벌칙 - §115~119

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이하 벌금	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 용도로 이용 or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
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이하 벌금	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업무수행하면서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 용도로 이용 or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

p249 문제17 정답·해설수정

*(기존) 정답 ④ ⇒ *(변경) 정답 ③

17 ③ 1)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/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한다.
 2)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 × 미지급일수 × 1/2로 계산한다(고보령 §85①).
 3) 문제의 피보험자의 미지급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이므로 피보험기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소정급여일수가 1/2 이상 남은 상태이며,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자이다. 따라서, 피보험자는 구직급여일액 6만 6천원 × 미지급일수 120일 × 1/2 = 396만 원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.

정답 > 17 ③

p323 문제34번 정답수정·해설추가

*(기존) 정답 ② ⇒ *(변경) ①,②

33 ② 장애 - 노동력 상실, 감소 + 치유 ○.
 ③ 폐질 - 없어진 용어.
 ④ 중증요양상태 - 노동력 상실, 감소 + 치유 ×.

34 ① 개정되어 현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.
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.
 ⑤ 2018. 12. 11 개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한다. 다만,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하며,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(소유했든, 안했든)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므로 5번 지문은 여전히 맞는 지문이다.

정답 > 33 ④ 34 ①,②

P364 문제17 정답수정

*(기존) 정답 ④ ⇒ *(변경) 정답 ⑤